##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2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박상혁·강준현·오영환

임오경 · 이동주 · 윤후덕

서삼석 · 최인호 · 황운하

박재호 · 김윤덕 · 허 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 또한 모호하여 해당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식적인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체험행위가 무분 별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수공 통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험행사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6조의3 및 제7조제4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7의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제6조 중 "생물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종"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질병 등의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 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

이를 주게 하는 등 체험행사를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7조제4호"를 "제7조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8호"를 "제3조제1항제7호의2·제8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제3조(등록 등) ①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u>제3호 및 제5호</u> 에 대	<u>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u>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2</u>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의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
	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
	공통 질병 관리계획
8. 보유 생물의 <u>질병 및 인수공</u>	8 <u>안전관리계획</u>
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	
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	
<u>획</u> ,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u>생물</u>	대통
<u>종</u> 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
을 저	공하여	겨야	하다.	

<신 설>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 제7조(금지행위)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 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물종	_
	_

제6조의3(질병 등의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이용 하는 자에게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체험행사를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16조(벌칙) ①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제4호</u>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제4호</u> 에 따른 행위를	3. <u>제7조제5호</u>
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1. <u>제3조제1항제7호의2·제8호</u> -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